고용노동부

# 보도자료

휴먼뉴딜 한국판뉴딜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보도일시 | 2021. 12. 22.(수) 조간 *인터넷 2021. 12. 21.(화) 12:00 이후 / 총 9쪽 | | |
| 담당부서 |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| 과 장 허윤선<br>사무관 신효빈<br>주무관 이현지 | 044-202-7481<br>044-202-7498<br>044-202-7486 |
| 담당부서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 | 부 장 정혜영<br>차 장 최준혁<br>대 리 정지혜 | 031-728-7056<br>031-728-7226<br>031-728-7158 |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 '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

- **장애인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 '22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실시**
- **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시 최대 960만원 지원**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2022년부터 **「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」 사업을 시행**하고, 관련 내용을 12월 21일 공고한다.

□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**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**하기 위해 **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**하는 사업이며,

○ **소규모 기업**이 **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**하여 **6개월 이상 고용**하는 경우 **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**한다.

### 1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□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**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** ② **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**하여 ③ **6개월 이상 고용**을 유지한 경우 받을 수 있다.



○ ① **사업주**란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,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를 말하며,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**월 16일 이상,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**를 말한다.

○ ② **「장애인고용법」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, 월 60시간 이상** 일하는 조건으로 **신규고용한 경우**(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)로,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**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***까지 인정된다.

*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~32명인 경우 1명, 33명~49명인 경우 2명

○ ③ 장애인 근로자 신규채용 후 ②번 요건을 충족한 기간이 **최소 6개월 이상**이면 지급한다.

### 2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□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**성별 및 장애 정도**에 따라 **근로자당 월 30~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**받을 수 있다.

○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시 **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(180~480만원)**을 지급하며,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**1년에 해당하는 금액(360~960만원)**을 지급한다.

| 구분 | 지급 단가(월) |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(단가x6개월) |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(단가x1년) |
|---|---|---|---|
| 경증남성 | 30만원 | 180만원 | 360만원 |
| 경증여성 | 45만원 | 270만원 | 540만원 |
| 중증남성 | 60만원 | 360만원 | 720만원 |
| 중증여성 | 80만원 | 480만원 | 960만원 |

○ 다만, **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**(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)의 **60%**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.

## 3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?

□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**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**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**우편 및 전자신청**도 가능하다.

*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-1519 / 지역본부 및 지사(붙임2)

○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, 사업지침 등은 **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(www.kead.or.kr)**에서 확인 가능하며, 추후 전자신청은 **e-신고시스템(www.esingo.or.kr)**에서 신청할 수 있다.

*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→ 공지사항 → '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' 검색

## 4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?

□ **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**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

○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**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구인신청**을 하여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.

□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"**코로나19의 장기화**로 인해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**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**"이라고 말하며,

○ "이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**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**하고 **고용상황을 개선**하는 데 **도움이 될 수 있을 것**으로 기대한다."라고 밝혔다.

□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공고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의 사업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*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-1519 / 지역본부 및 지사(붙임2)

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효빈 사무관(☎044-202-7498), 이현지 주무관(☎044-202-7486)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혜영 부장(☎031-728-7056), 정지혜 대리(☎031-728-7158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붙임1** **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문**

**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-00호**

#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

'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21일

고용노동부장관

## 1. 사업 개요

○ **(목적)**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

○ **(사업기간)** '22년 1월 1일 ~ '24년 12월 31일

○ **(법적근거)**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조 및 제21조

## 2. 지원요건

○ **①지원대상 사업주**가 **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**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**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**한 경우

### ① 지원대상 사업주

– **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**인 사업주(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,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)

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제외

– **'상시근로자'**란 ①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자이면서,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(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)이고,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

– **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**은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기준

* 예) 대상 근로자를 1월 30일에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월(소정근로시간 60시간 가정 시)임



### ②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

– '22년 1월 1일 이후 **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**한 경우로서,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

– **'장애인'**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**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** 기준 또는 **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(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상이등급**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
*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①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

②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

–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**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**까지 인정

*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~32명인 경우 1명, 33명~49명인 경우 2명

###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

–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**상시근로자 요건**(월 60시간 이상(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), 16일 이상) **충족을 기준**으로 고용유지기간을 산정

* 예) '22.1.28.~'22.7.26. 고용하여 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, 16일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기간은 2월부터 7개월까지의 6개월에 해당함

– 고용유지기간 중 **휴직 등**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**고용유지기간이 연장**되며, 고용관계가 **종료되는 경우**는 재입사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**고용유지기간이 종료**된 것으로 봄

## 3. 지원내용

○ **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**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지급

*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~32명인 경우 1명, 33명~49명인 경우 2명까지 지원

- 단, 지급 단가와 **월임금액**(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)의 **60%**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

| 구분 | 지급 단가(월) |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(단가x6개월) |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(단가x1년) |
|---|---|---|---|
| 경증남성 | 30만원 | 180만원 | 360만원 |
| 경증여성 | 45만원 | 270만원 | 540만원 |
| 중증남성 | 60만원 | 360만원 | 720만원 |
| 중증여성 | 80만원 | 480만원 | 960만원 |

* 예) 경증남성 1명을 고용하여 ①12개월간 고용유지하고 신청하여 360만원 지원 또는 ②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180만원 신청하여 지원, 이후 6개월을 더하여 고용유지하고 180만원 신청하여 지원, 최대 지원금액은 360만원

- **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**가 **「고용보험법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**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**차액만을 지급**

※ 단,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

- **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**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**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**

※ 단,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(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나,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)에 우선 산입

## 4.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

○ **절차**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**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**하여 검토 후 지급

| 장애인 고용 | ⇨ | 6개월 이상 고용유지 | ⇨ |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| ⇨ | 신청내용 검토 후 지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주 | | 사업주 | | 사업주 | |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|

○ **신청**은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,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**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**(붙임2)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,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

*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(www.kead.or.kr)
전자신청은 e-신고시스템(www.esingo.or.kr)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



## 5. 기타사항

○ 자세한 사항은 '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' 참조

*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(www.kead.or.kr)에서 확인 가능

○ 문의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-1519
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(붙임2)

## 붙임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

| 기 관 명 | | 전 화 | 주 소 | |
|---|---|---|---|---|
| 공단본부 | | 031-728-7001 | 13619 |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(구미동) |
| 지역본부 | 서울지역본부 | 02-6320-7000 | 04554 |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, 11층(충무로3가) |
| | 부산지역본부 | 051-640-9813 | 47358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, 10층(범천동) |
| | 대구지역본부 | 053-288-1500 | 42425 |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, 13층(대명동) |
| | 광주지역본부 | 062-448-1155 | 61946 |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, 12층(치평동) |
| | 대전지역본부 | 042-620-6200 | 35220 |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, 13층(월평동) |
| | 경기지역본부 | 031-300-0906 | 16487 |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, 4층(인계동) |
| 지사 | 서울남부지사 | 02-6004-1005 | 07254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, 6층(영등포동 2가) |
| | 서울동부지사 | 02-2146-3500 | 05510 |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, 11층(신천동) |
| | 인천지사 | 032-242-1004 | 21417 |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, 1층(구산동) |
| | 울산지사 | 052-226-1004 | 44726 |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, 10층(달동) |
| | 경기북부지사 | 031-850-4500 | 11649 |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, 3층(의정부동 신도아크라티움) |
| | 경기동부지사 | 031-600-0209 | 13638 |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, 2층(구미동) |
| | 강원지사 | 033-737-6620 | 26336 |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, 4층(우산동) |
| | 충북지사 | 043-230-6400 | 28399 |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, 3층(가경동) |
| | 충남지사 | 041-629-6000 | 31124 |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, 3층(신부동) |
| | 전북지사 | 063-240-2400 | 54906 |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, 11층(인후동2가) |
| | 전남지사 | 061-983-1800 | 58730 |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, 7층(호남동) |
| | 경북지사 | 054-450-3000 | 39280 |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, 6층(송정동) |
| | 경남지사 | 055-225-8006 | 51515 |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, 6층(중앙동) |
| | 제주지사 | 064-710-5010 | 63213 | 제주특별시 제주시 동광로 30, 6층(이도이동) |